

존중의 즐거움  
Take Enjoyment in Respect

HEMI (Humanrights Education for Mental Illness)  
인권교육프로그램 워크북





## 경기도 정신장애인 인권실천 가이드라인

1.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권을 가지며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
2. 자신의 의료적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입·퇴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3. 정신보건시설에서는 외출, 외부와의 소통, 표현에 대하여 자유로워야 한다.
4. 학대와 경제적, 성적 또는 부적절한 치료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5.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최적의 치료와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6.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7. 모든 사람은 가장 적절한 정신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8. 노동착취를 당하지 않고 합당한 보수를 받으며 직업선택이 자유로워야 한다.
9.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신적 상태를 고려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0. 다른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참정권을 가져야 한다.

[경기도 정신장애인 인권향상 편견해소를 위한 프로젝트 '존중의 즐거움'. 2009]

이 인권가이드라인은 경기도 인권TFT(Task Force Team)에서 세계인권선언, 장애인권리선언, 하와이선언, 카라카스선언, MI 원칙 등을 정리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강제조항이 아닌 말 그대로 '선언'이지만 UN(국제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이것만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최소한의 인권을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정의한 중요한 선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나온 '인권 가이드라인'도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반드시 이것만은 지켜져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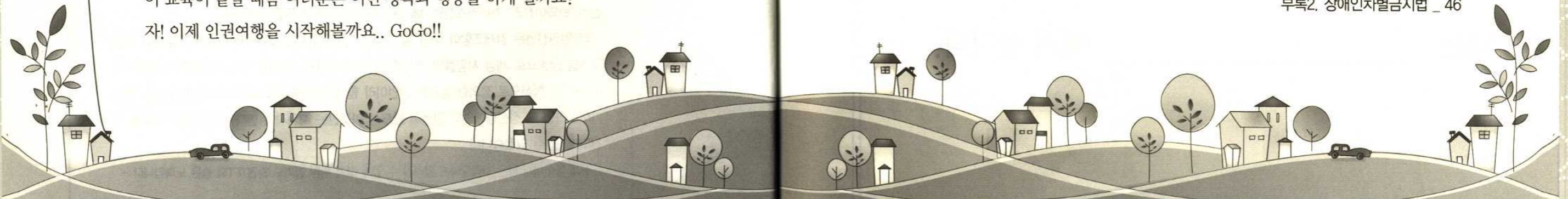
- 쉽게 풀어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경기도 인권TFT의 숨은 노력입니다 -



정신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등 사회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히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취지로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는 2009년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모임(경기도 인권TFT)을 구성하고 회의와 시범운영 등의 과정을 거쳐 정신장애인 **인권교육 HEMI**(헤미; Humanrights Education for Mental Illness)를 만들었습니다.

교재안의 **'다남'**이란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찾는 여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될까요?  
자! 이제 인권여행을 시작해볼까요.. GoGo!!



# Contents

- 1. 출발! 인권여행 \_ 4
- 2. 난 소중한요 \_ 6
- 3. 인권! 누구냐 넌? \_ 9
- 4. 인권아 친구하자 \_ 11
- 5. 차이와 차별 이해하기 \_ 13
- 6.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_ 16
- 7. 존중받으면 달라져요 \_ 19
- 8. 우리 몸과 인권 \_ 22
- 9. 인권지도 그리기 \_ 27
- 10. 인권 공간 만들기 \_ 28
- 11. 법과 친해지기 \_ 29
- 12. 인권지킴이가 되어요 \_ 36
- 13. 대중매체와 인권 \_ 37
- 14. 국가인권위원회 1 \_ 38
- 15. 국가인권위원회 2 \_ 41
- 16. 인권모임 만들어요 \_ 42

부록1. 함께 고민해봐요 \_ 43

부록2. 장애인차별금지법 \_ 46



### 1. 출발 인권여행

■ 교육목표 : 인권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생각해봐요.

다님 1. 우리함께 인사해요.

돌아가면서 참가한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을 익히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밑에 제시한 내용외에 가족이나 별명, 관심분야, 좋아하는 것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_\_\_\_\_ 입니다.

나는 \_\_\_\_\_ 살 입니다.

나는 \_\_\_\_\_ 에서 삽니다.



### 다님 2.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_\_\_\_\_ 를 좋아합니다

나는 \_\_\_\_\_ 를 잘 합니다



난 소중해요

## 2. 난 소중해요.

■ 교육목표 : 자신과 타인의 소중함을 알 수 있어요.

### 다짐 1. 우리에게 소중한 것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생각해보고 왜 소중한지 발표해보아요.



Large empty rectangular box for writing answers to the first activity.

난 소중해요



### 다짐 2. 나는 소중한 사람

자신이 왜 소중한지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봅니다.

나 \_\_\_\_\_ 는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reasons why one is valuable.

\_\_\_\_\_ 해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 다님 3.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

아래 글을 읽고 느낌을 이야기해보아요.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  
내 몸이 차가우면  
친구의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없듯이,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친구의 마음을 받아 줄 수 없듯이,

내 방이 어질러져 있으면  
친구를 방 안에 들어오라고 할 수 없듯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친구도 소중히 여기기가 어려워요.

모두가 날 따돌린다고 느꼈을 때  
여전히 "안녕?" 하며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친구가 있었기에  
나도 다른 친구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로부터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친구에게 주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아요.

마음 아파하는 친구를 그저 보고만 있으면  
그 친구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아프게 되지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야 친구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으니까요.



(출처: '인권그림책' 시리즈 1권, '나는 소중한' 26p, 이와카와 나오키 저, 미래M&B 출판)



### 3. 인권! 누구나 넌?

■ 교육목표 : 나에게 소중한 것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어요.

#### 다님 1. "나에게 소중한 5가지"

자신이 인생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사랑, 우정 등), 사람(어머니, 아버지, 가족 등), 물건(컴퓨터, 핸드폰 등) 등을 잘 생각해보고 그 내용을 적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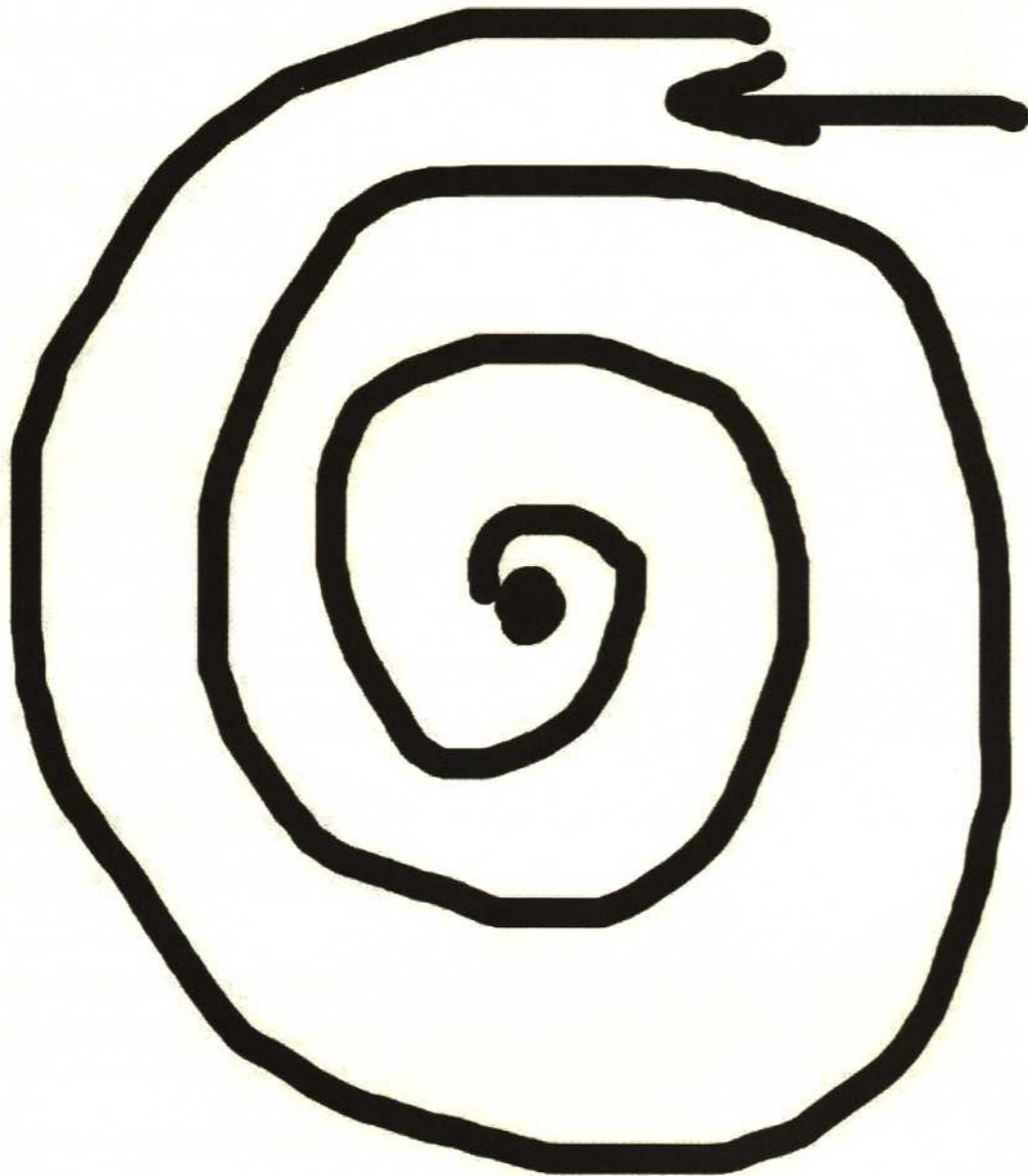
1	
2	
3	
4	
5	



인권! 누구냐 넌?

### 다님 2. "길따라 삼천리"

2명이 짝을 이루어 한명은 술래가 되어 눈을 감고 펜을 들고 나머지 한 명은 인솔자가 되어 화살표를 시작으로 가운데 '점' 까지 갈 수 있도록 안내해 보아요. 단, 인솔자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마시고, 말로만 잘 설명해주세요.



인권아! 친구하자 ~



### 4. 인권아! 친구하자 ~

■ 교육목표 : 인권의 정의를 내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 다님 1. 인권이란 무엇이다.

제시된 카드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보아요.  
그리고 인권이 왜 그것인지 자유롭게 적어보아요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인권이란 \_\_\_\_\_ 이다.

왜냐면 \_\_\_\_\_

\_\_\_\_\_

\_\_\_\_\_

\_\_\_\_\_ 이기 때문이다.



## 다님 2. 인권을 존중하는 단어찾기

인권과 관련된 단어를 찾아볼까요?

인권을 존중하고 지킬 수 있는 단어들을 적어보아요.

A large, empty, cloud-shaped frame intended for students to write down words related to human rights.



## 5. 차이와 차별 이해하기

■ 교육목표 : 차이와 차별을 이해해 보아요.

### 다님 1. 차이와 차별 이해하기

차씨 집안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차씨 집안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이' 라는 이름이고,  
둘째는 '별' 이라는  
이름의 아가였습니다.

둘은 생김새가 비슷한 만큼  
모든 것이 닮았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것도  
옹알옹알 종알거리는 것도  
모두 닮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사람들은  
차이와 차별이가  
어렸을 때는 둘을  
전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두 아이는 닮은 듯도 하면서  
너무나 달려져 버렸습니다.

학생이 되어서  
학교를 다니던 어느날

차별이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친구에게  
너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못생기고  
집이 가난한 친구들을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자신과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장애인 친구가  
다리가 불편한 것과  
자신이 다리(개)를)  
불편하지 않다는 것은  
그저 서로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만의

소중한 점과  
그 친구만의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차별이는  
차신이 키가 작다는 이유로  
도리어 다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었지만

차이는 키가 작지만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친구들에게 밝은 미소를 지어주기에  
다른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차이와 차별은  
서로 닮은 쌍둥이 같지만  
너무나 다른 개념입니다.

나의 인권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남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래서 타인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답니다.

혹시 나는  
내 주위의 친구와는 차이를  
차별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둘러보세요.





### 다짐 2. 윈스턴과 알라오 고쳐쓰기

이 글에서 누군가의 일방적인 관계 혹은 차별적일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아요. 그리고 인권을 느낄 수 있는 글로 새롭게 고쳐보아요.

[윈스턴과 알라오]

윈스턴씨는 영국 사람.  
 그에게는 알라오라는 친구가 있어.  
 알라오는 아프리카 사람.  
 윈스턴씨는 의사이고,  
 그의 친구 알라오는 농부라네.  
 윈스턴씨는 알라오가 아플 때마다 항상 치료해주지





### 6.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 교육목표 : 자신과 타인의 고정관념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 다님 1. 고정관념 단어 연결시켜 보아요

제시되어있는 '사람'에 어울리는 '형용사'를 찾아 연결해 봅니다.

똥똥한 사람 ○	○살이 찌지 않는다.
머리카락이 굵고 짙은 사람 ○	○ 게으르다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 ○	○ 불량하다
정치가들 ○	○ 자유분방하다
가난한 사람 ○	○ 권위적이다
신세대들 ○	○ 나쁜 사람이다
여배우들 ○	○ 둔하다
목소리가 작은 사람 ○	○ 아름답다
신경질적인 사람 ○	○ 심술궂다
문신한 사람 ○	○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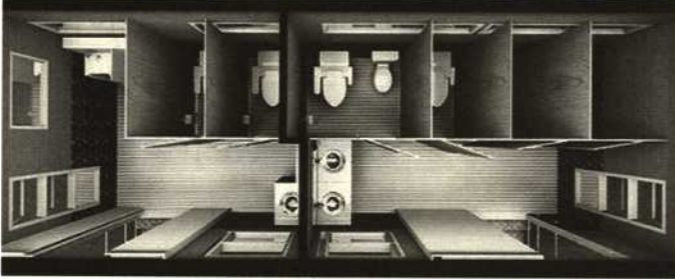


### 다님 2. 고정관념 그려보기

제시된 글을 읽고 그림으로 상황을 표현해 보아요. 그림안의 고정관념을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린 그림과 비교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봐요.



[ 다른 그림들을 보면서 그림안의 고정관념들을 찾아보아요 ]



### 7. 존중받으면 달라져요.

■ 교육목표 : 존중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 다짐 1. 나의 소중한 물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을 적어보아요. 그리고 소중한 것을 빼앗겼을 때를 상상하고 이야기를 해보아요.

소중한 물건

---

부당하게 소중한 물건을 빼앗긴다면?

---



### 다님 2. 존중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누군가에게 존중 받아본 경험은 있었나요? 반대로 누군가를 존중했던 경험이 있었나요?  
생각해보고 한번 적어보아요.

누군가에게 존중받아 본적이 있었나요?

누군가를 존중해 본적이 있었나요?



### 다님 3. 존중받으면 달라진다.

존중받으면

\_\_\_\_\_ 가(이) 달라져요.



### 8. 우리 몸과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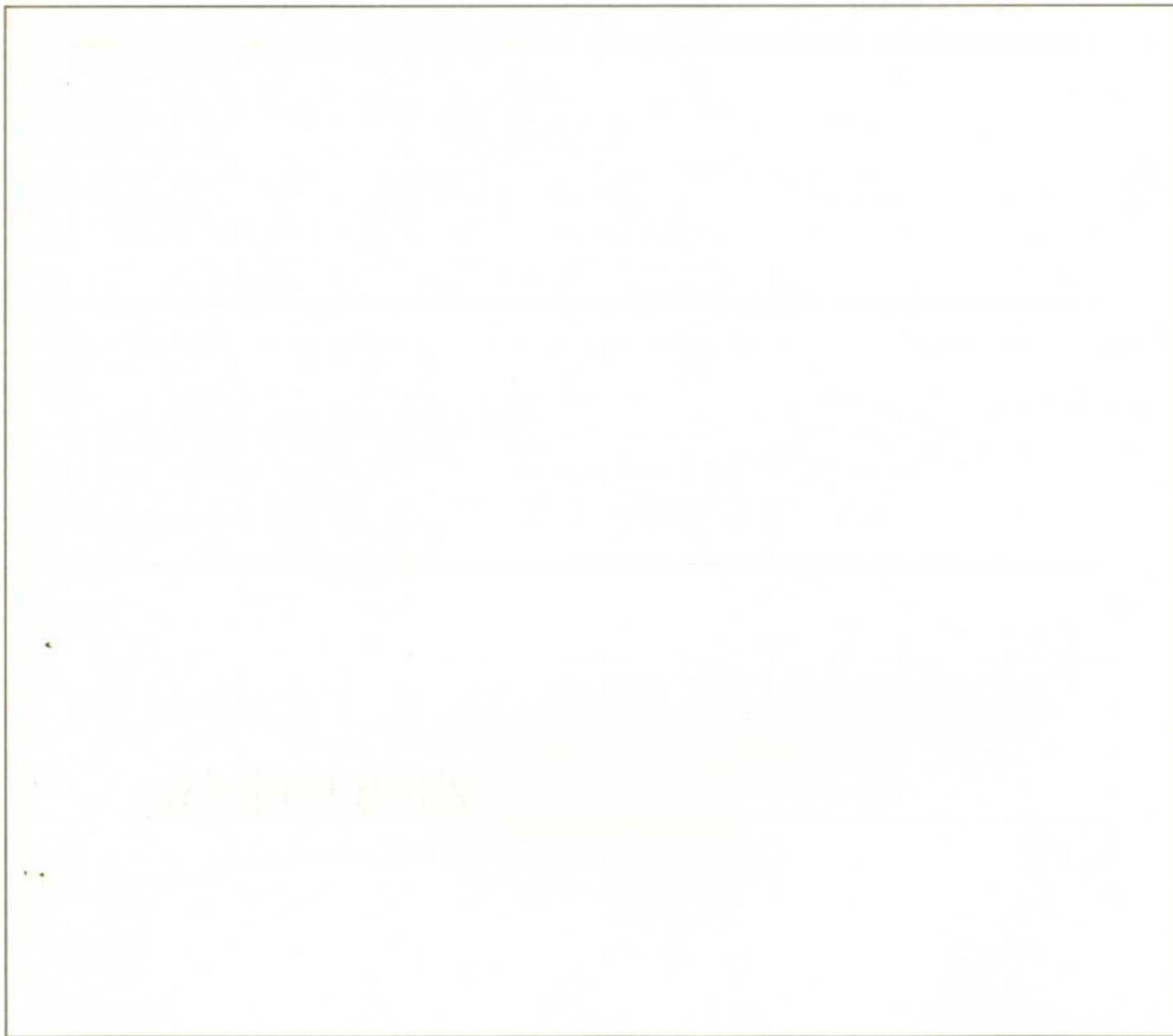
■ 교육목표 : 우리 몸의 각 부분에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알아보아요.

#### 다님 1. "말하지 않고 생일별로 줄서기"

말을 하지 않고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생일 순서대로 줄을 서 보아요.

#### 다님 2. 우리 몸과 인권 : 인권실루엣 표현하기

우리 몸 곳곳에 존재하는 인권들을 찾아보아요. 우선 사람 그림을 그려주세요.



### 세계인권선언

#### 제 1조 :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 제 2조 : 차별은 안돼!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 제 3조 : 안심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 제 4조 : 노예는 없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없다.

#### 제 5조 : 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 제 6조 : 법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는 모두 어디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간다.

#### 제 7조 :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 제 8조 : 억울할 때는 법의 도움을 청하라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 제 9조 : 제멋대로 잡아 가둘 수 없다

사람은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멋대로 잡히거나 감히거나 그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 제 10조 : 재판은 공정하게

우리는 어느 누구를 편들지 않는 독립되고 편견 없는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11조 :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

공정한 재판으로 유죄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또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보장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죄를 범했을 때에 존재하는 법률에 따라서만 벌을 받는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로는 처벌 받지 않는다.

**제 12조 :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나의 사생활, 가족, 집, 편지나 전화 등 통신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나의 명예와 신용에 상처 입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 13조 : 떠나고 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안에서 어디든 오고 갈 수 있으며,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다. 어떤 나라에서도 떠날 수 있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4조 : 도망치는 것도 권리다**

누구나 괴롭힘을 당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쳐 피난처를 찾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가 보아도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

**제 15조 : 어느 나라 사람이든 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나라의 국민이 될 권리를 가지며, 국적을 바꿀 권리도 가진다. 누구도 함부로 나의 국적을 빼앗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

**제 16조 :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른이 되면 누구나 결혼하여 가정을 가질 수 있다. 인종, 국적, 종교를 이유로 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며 결혼할 사람 둘 간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만 결혼할 수 있다. 결혼에 있어서나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설령 이혼할 때에도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가정은 나라의 보호를 받는다.

**제 17조 : 재산을 갖는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재산은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 18조 :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을 바꾸는 것도 자유이고, 혼자서 또는 여럿이 함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도 있다.



**제 19조 : 표현하는 것도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과 상관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 20조 : 모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롭게 집회를 열고 단체를 만들 자유가 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소속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제 21조 : 선거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선거로 자기 나라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선거는 올바르게 평등하게 해야 하며, 누구에게 표를 찍는지는 비밀로 할 수 있다.

**제 22조 :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각 나라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제 23조 : 마음 놓고 일하기 위하여**

사람은 직업을 자유롭게 골라서 일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조건은 일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것이어야 하며, 일터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일에 대한 대가는 일한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24조 : 쉬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쉴 권리가 있다. 무한정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은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 25조 :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누구에게나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위하여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공하는 보장 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26조 : 배울 수 있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기초단계의 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과 모든 종교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적으로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 27조 : 즐거운 생활**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를 갖는다.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 과학·문학·예술의 산물에서 나오는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28조 : 이 선언이 바라는 세상**

우리 모두는 이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 29조 : 우리의 의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

**제 30조 : 권리를 짓밟는 권리는 없다**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에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쉽게 풀어쓴 세계인권선언 : 세계인권선언 원문과 국제앰네스티,유니세프의 축약본을 참조하여 인권운동사랑방이 쉬운말로 고쳐 쓴것입니다]



**9. 인권지도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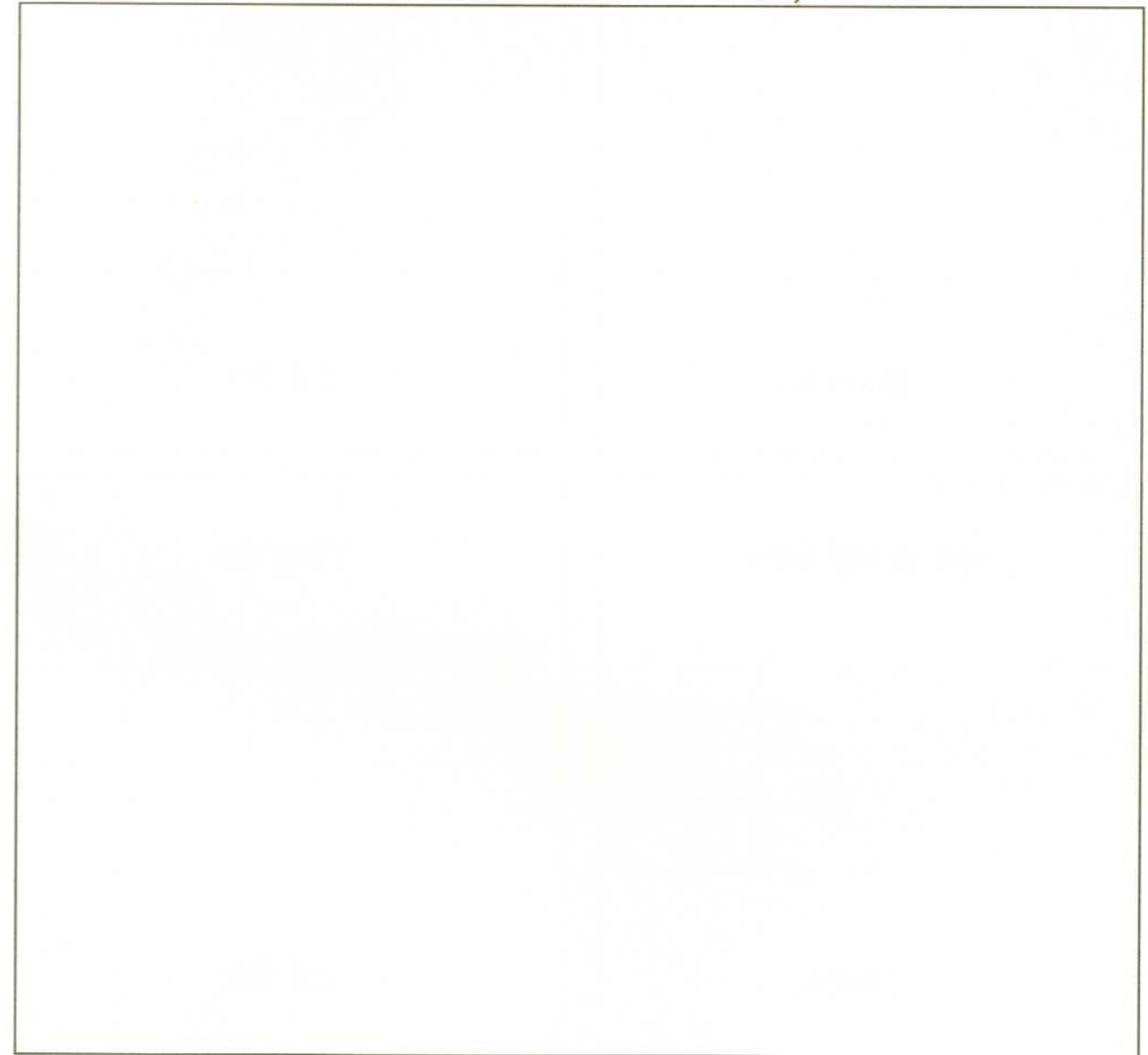
■ 교육목표 : 우리가 사회 안에서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인권을 찾아보아요.

**다님 1. "풍선을 통통"**

풍선이 자신의 인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통통 튕겨보아요.

**다님 2. 인권지도 그리기**

집, 병원, 센터 및 시설, 지역사회 등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그린 후 인권침해 혹은 차별 당한 사례와 지지받고 존중받은 사례를 적어보아요.





### 10. 인권 공간 만들기

■ 목표 : 내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사례를 살펴보고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봅시다.

다짐 1. 이 공간에는 \*\*\*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우리의 인권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잘 생각해서, 포스트잇에 적어봅니다.

<p>가정에서는</p>          <p>필요해요.</p>	<p>병원에서는</p>          <p>필요해요.</p>
<p>센터 및 시설에서는</p>          <p>필요해요.</p>	<p>가정에서는</p>          <p>필요해요.</p>



### 11. 법과 친해지기

■ 교육목표 :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 다짐 1. 빙고 게임

우리 흥미진진한 빙고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인권을 존중하는 단어 찾기"를 기억하세요? 인권과 관련된 단어를 생각해서 빈칸에 넣어보아요.




## 다님 2. 우리가 알아야 할 법에 대해 살펴보기

### 1. 정신보건법

#### 제1장

■ 목적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 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 ■ 기본이념

-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정신질환을 가진 미성년자는 특별히 치료와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는 항상 자발적인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 용어정의

정신질환자 :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장애를 가진 자  
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국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을 예방한다.
-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사회복귀를 위한 연구와 상담 사업을 한다.
-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한다.

#### ■ 국민의 의무

-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관련 사업에 협력한다.

#### ■ 정신보건시설 운영자의 의무

- 정신질환자와 보호자에게 정신보건법에 의한 그들의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 ■ 인권교육

-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2장 정신보건시설

■ 정신의료기관 : 정신질환자를 진료할 목적으로 의료법의 시설기준에 맞도록 설치된 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말한다.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받는 시설이다.

■ 정신요양시설 : 정신질환자가 입소하여 요양을 하며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훈련을 받는 시설이다.

### 제3장 보호 및 치료

#### ■ 보호의무자

- 정신질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해서만 입원시킬 수 있다.
- 정신질환자가 자타해의 위험이 없도록 유의하고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입퇴원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정신질환자의 재산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지 않는다.

#### ■ 자의입원

-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등에 자의로 입원 등을 할 수 있다.
- 자의로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 자의로 입원한 환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퇴원의사를 파악하고 그 환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입원시킬 수 있다.
- 입원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치료 심사청구를 한다.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퇴원 신청 시 곧바로 퇴원시켜야 하나 환자가 위험성이 있는 경우 병원장은 퇴원거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자와 보호자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며 자타해의 위험이 있고,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 ■ 응급입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고 자타해의 위험이 큰 사람이 발견되었으나 다른 입원절차가 불가능할 때 정신과의사와 경찰관 등의 동의를 얻어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할 수 있다.



- 응급입원은 72시간 이내로 가능하며, 정신과전문의 진단 결과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자의 입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해야 한다.

### 제4장 퇴원의 청구심사 등

####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 정신보건자문과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위한 기관이다.
- 구분 :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 ■ 퇴원심사 등의 청구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및 보호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입원 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 외래치료명령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년 이내에서 외래치료명령을 할 수 있다.

### 제5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 ■ 권익보호

-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다.
-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

#### ■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 정신질환자를 치료 및 보호할 수 있는 시설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해서는 안 되며,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다.

#### ■ 행동제한의 금지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통신 및 면회 등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 ■ 환자의 격리 제한

-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은 자·타해의 위험이 높고 신체적 제한의 방법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환자의 치료 또는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 이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 ■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과 동기가 있어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업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 작업시간, 위험성여부, 장소는 법에 따른다.

### 제 6장 벌칙

####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신질환자의 재산 등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 보호자
- 퇴원해야 할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않는 정신병원장
- 정신과전문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고 입원을 연장한 사람
- 3개월이 지났는데 입원조치 해제를 하지 않거나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은 시장·군수·구청장, 정신병원장
- 3개월이 지났는데 입원조치 해제를 위반하고 정신질환자를 다른 시설로 옮겨 수용한 자
-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정신보건시설장 또는 종사자
- 정신질환자·보호자의 동의와 협의체의 결정 없이 전기충격요법·인슐린혼수요법·마취·최면요법·정신외과요법 등의 특수치료를 행한 자

####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치료 또는 재활이 아닌 노동을 강요한 자
-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
- 치료의 필요성에 의하지 않고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방해한 자

####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의 입원한 환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퇴원의사를 물어보지 않았거나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자
-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지 않은 자
- 6개월마다 계속입원 등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연시킨 자
-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즉시 퇴원시키지 않은 자
- 입원하는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 확인이나 조회를 요청하지 않은 자
-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녹화·촬영을 한 자
-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 작업을 시키거나 정신과전문의·정신보건전문요원이 지시한 방법과 다르게 작업을 시킨 자
-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사회단체·언론기관 등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개방을 요구하는데 응하지 않은 자 (500만원 이하 벌금)
-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그 내용확인을 거부한 자 (300만원 이하 벌금)

## 2. 인신보호법

- 목적 : 시설에 수용되어 부당하게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 구제청구 : 법에 위반되게 수용하거나 수용할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계속 수용되어 있는 사람과 그 보호자·후견인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청구의 방식
  - 구제청구는 다음 내용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구제를 청구하는 사람의 주소 및 성명
    2. 수용자의 성명, 주소, 특정사항
    3. 피수용자의 성명
    4. 청구의 요지
    5. 수용이 법적으로 위반된 내용
    6. 수용 장소
- 수용의 임시해제
  - 수용된 사람의 신체의 위험 등을 긴급히 예방하기 위하여 법원은 임시로 수용을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법원은 수용을 임시해제 하면서 풀려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법원의 호출에 응하겠다는 서약을 받아야 한다.
  - 수용 임시해제 되어 풀려났던 사람이 법원의 호출에 응하거나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법원은 수용 임시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그 사람을 원래의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에 유치할 수 있다.
- 피수용자의 신변보호
  - 법원은 피수용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적당한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 결정
  - 법원은 구제·청구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구제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법원은 구제·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없던 것으로 한다.
- 재수용의 금지
  - 이 법에 따라 수용이 해제된 자는 예전과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할 수 없다.



### [ 구제청구 하는 법 ]

수용자(시설장)	피수용자(그 사람)
<p>여긴 어디? 번호~</p>	<p>어랏~</p>
수용자의 성명, 주소, 특정사항.	구제를 청구하는 사람의 이름 및 주소 등.





### 12. 인권지킴이가 되어요.

■ 교육목표 :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아요.



#### 다님 1. 당사자 인터뷰 영상 보기

존중의 즐거움-인식개선동영상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 (2008.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제작)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를 나눠요.

#### 다님 2. 인권지킴이가 되어요.

각 모둠별로 우리가 경험한 인권침해를 모았으면 해요. 모둠별로 침해내용을 적어보고, 이에 대한 원인,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서 적어보아요.

인권침해내용	원인	해결방안



### 13. 대중매체와 인권

■ 교육목표 : 영화, 뉴스, 드라마, 개그프로그램 등 대중매체 영상 등을 본 후 차별과 침해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생각해 봅시다	제목 또는 주제(내용)	
침해 또는 차별적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또는 어떻게 바꿀까요?		



### 14. 국가인권위원회 1

■ 교육목표 : 국가인권위원회를 알아보아요.

#### 다님 1. 종이비행기 날리기

지금 자신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색지에 잘 적어봅니다. 다 적으신 분은 색지를 종이비행기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 다님 2.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인가요?

#####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전담기구로 모든 개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권리들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 ■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 ◆ 인권관련 정책활동

: 인권관련법이나 제도, 정책, 관행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개선을 강력하게 권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활동을 합니다.

##### ◆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조치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급시설, 보호시설에서 인권침해접수에 대해 조사하고 침해 사실이 결정되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활동을 합니다.

##### ◆ 인권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홍보

: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인권의식이나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합니다.

##### ◆ 국내 인권단체와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 협력

: UN이나 인권관련 국제회의, 해외인권단체 방문, 해외 인권단체와 국내 인권상황 공유 및 협력을 합니다.

##### ■ 국가인권위원회 이용하려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전화·우편·팩스·홈페이지·이메일을 통해 접수합니다.

접수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진정에 대해서는 권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다님 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해보아요.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7호

접수번호	날짜 200년 월 일 시 분		
<b>진 정 서</b>			
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침해를 '신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① 이름	②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③ 국적	④ 주소		
⑤ 전화	⑥ 팩스	⑦ 이메일	
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침해를 겪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① 이름	②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③ 국적	④ 주소		
⑤ 전화	⑥ 팩스	⑦ 이메일	
⑧ 진정인과의 관계		⑨ 기타	
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진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① 이름		② 소속	
③ 연락처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해당 진정 내용을 법원에 고소, 고발한 적이 있는지, 비슷한 사건으로 진정해 적어본 적이 있는 지에 대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고소, 고발 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② 법원·헌법재판소 등 권리구제기관의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누구 ( )			
5.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6. 첨부서류:  있음  없음

7.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습니까?

① 때 ② 장소

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겪은 내용을 적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상담 후 종결로 처리하기 원합니다.  진정 접수를 원합니다.

(상담만으로 종결할 것인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하는 행위(진정)를 원하는 지 체크합니다.)

진정인 \_\_\_\_\_ (서명 또는 날인)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하면 조사 종결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

긴급구제조치 필요 불필요

200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15. 국가인권위원회 2

■ 목표 : 진정서를 직접 작성하고 처리과정을 배워보아요.

#### 다님 1. "지지도언어 판" 을 뒤집어요.

'인권을 존중해주는 지지도언어' 를 이전 프로그램에서 진행했었죠? 그 때 나왔던 단어들을 가지고 '뒤집기게임' 을 해보려고 합니다. 단어판 한쪽에는 인권을 존중해주는 단어이고, 다른 한쪽은 인권을 침해하는 단어입니다. 팀을 나누어서 한 팀은 존중해주는 단어쪽으로 넘기고, 다른 한 팀은 인권을 침해하는 단어쪽으로 넘기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요?

#### 다님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해보아요

지난주에 알아봤던 진정서를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정서를 작성해 보아요.

#### [ 용어해석 ]

진 정 서 : 청구나 권리주장을 법원에 알리는 문서나 절차

진 정 인 : 인권침해를 '신고' 하는 사람

피 해 자 : 인권침해를 겪는 사람

구 제 :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

고 소 :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

청 구 :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나 재산을 요구

각하·기각 :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 또는 거절

권 고 :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

직권조사 :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



### 16. 인권모임을 만들어요

■ 목표 : 인권모임에 대해 알아보고, 인권모임을 만들어봅시다.

#### 다님 1. '모의 100분토론' 진행해보기

여러분, 100분토론 아시죠? 인권을 혼자만 알고 있기보다 여러 사람이 알고 실천할 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100분 토론의 주제는 '인권모임 필요하다.' VS '인권모임 필요하지 않다' 라는 주제로 가상 토론을 해 볼까합니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봅시다.

인권모임 필요하다	인권모임 필요하지 않다

#### 다님 2. 인권모임을 만들어보요.

이번엔 인권모임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인권모임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편하게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봅시다.



### 부 록 1. 함께 고민해봐요

#### 1. 정신장애인의 주거권은 무시당해야 하나요?

상황 : 다세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이 양성증상으로 인한 피해의식으로 윗층에 올라가 광광 소리를 내며 시비를 걸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걷어차고 망치로 내려찍는 등 무서움에 시달려 민원을 접수시켜 입원을 하게 되었으나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치료받고 퇴원을 하게 되어도 반복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가족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라며 거부하고 공동주택 이웃들은 무서워서 못살겠다며 이사갈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안만들기 : 이 문제는 정신장애인의 주거권이 우선인가, 주민들의 주거권이 우선인가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인 가족,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와 공동주택 주민들이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서로 소통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신장애인의 상황을 이웃과 공유하고, 정신장애인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경우, 정신장애인이 낮치료와 밤병동을 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센터에서 권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공동주택 이웃들이 정신장애에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정신장애에 대한 교육을 제안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후 교육이 잘 진행된다면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공동주택 주민 중 정신장애인에 의해 심리적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요.

#### 2. 정신장애인에게 치료를 거부할 권리(입원을 거부할 권리)는 없나요?

상황 : 정신장애인이 증상으로 인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전제로 치료를 하고 있지만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강요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원을 거부할 권리)는 없는지 고민이 되요.

대안만들기 : 이 문제는 정신장애인이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핵심일 것 같아요. 현재 시군,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부득이하게 강제입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 2인의 동의만 있으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에 대한 고려없이 입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보호자에 의한 입원 중 보호자의 편익에 의해 입원하고 있는 사례가 없도록 정신과 의사 등 병원관계자들이 좀 더 인권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한 입원 시 개입할 수 있는 창구를 확장시켜내는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해외의 게이트키퍼(입원을 결정하는 사람)의 사례처럼, 다양한 정신보건전문가가 입원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참, 입원시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입원의 종류와 퇴원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 정신장애인이 부당하게 입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정신장애인이 가장 불만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치료 방법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증상으로 인해서,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얼마나 복용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야 해요. 단지 한 번 설명해주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증상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고지도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퇴원에 대한 개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현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심사방식(6개월에 한번, 대규모 서면심사)이 개선되어야지요. 심사기간을 대폭 줄이고, 서면심사를 대면심사로 바꾸어야 하겠지요. 이를 위해 사회적 인식변화와 제도적인 지원을 만들어 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 3. 정신보건시설에 CCTV설치는 과연 정당한가요?

상황 :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장애인이 자해할 위험이 있다고 하여, 샤워실이나 화장실 등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정당한 일일까요?

대안만들기 : 이 문제의 핵심은 정신장애인의 사생활보호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자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장애인이거나, 극도로 우울한 상태에 있는 정신장애인이 있다면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담당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싶네요. CCTV보다는 환자 수에 맞게 치료자의 인원이 확보되어야 해요. 너무 이상적이라구요? 네. 약간은 이상적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CCTV설치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한 CCTV 설치를 부득이하게 한다면, 개인의 사생활을 극도로 침해하는 공간은 제외해야 하고, CCTV 설치에 대한 동의, CCTV 내용의 저장기간과 CCTV관리 담당자에 대한 공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최근 CCTV를 악용한 사례(CCTV내용조작, CCTV설치를 인지하고도 사고를 일으키는 건 등)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CCTV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 4. 보험차별..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하나요?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 여러분도 겪고 계시지요?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 17조)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 732조는 “15세 미만인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고 하여 특히 정신적장애인의 보험진입을 가로막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고 상법 제 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5세 미만인 자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라고 명명된 이들은 곧 의사능력과 판단력이 불완전한 자로 해석됩니다. 즉, 스스로 보험을 가입할 수 없고, 부모를 포함한 타인이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려 했을 때, 장애인 당사자는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이로 풀이되어 보험가입으로의 진입은 완전히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적용을 막는 이유는 장애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타기위하여 자타해 등과 같은 행위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를 담아 정신적 장애인만을 보험진입에 제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보험에 대한 문제는 전 장애, 전 보험에 확대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운전자 면허증은 있지만 자동차 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고, 발달장애인이어서 치아보험에서도 거절을 받습니다. 시각장애인이어서 암보험에 접근할 수 없고, 청각장애인이어서 상해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30세가 넘은 뇌병변장애인에게 엄마를 바꾸라고 화를 내는 상담원도 있습니다.

보험, 그깟 게 뭐간데? 안 들어도 그만 아닌가 싶지만, 국가로부터의 사회보장이 충분치 않은 “한국사회에서 보험”이란 불안적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자 하는 안정적 삶에로의 갈망,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지속을 향한 문으로의 진입로에 서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한국사회의 장애인의 삶은 썩 풍요롭지 못합니다. 안정적 삶을 위한 기반과 조건을 갖기도 어렵지요. 이런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의 보험가입은 만약을 대비한 준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보험차별을 막아내기 위한 상법의 개정 역시 당사자의 힘이면 가능합니다. 상법 732조를 삭제하는데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보험차별을 없애기 위한 몸 풀기를 시작해볼까요? 혼자서 하기엔 너무 감당하기 힘들겠죠... 여기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화 02-7333-421)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상담전화(1577-1330)가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다 손쉽게 활용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부록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에 의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직접 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간접차별 :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다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간접차별에 해당합니다.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광고에 의한 차별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 이는 광고에 의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1. 고용
  - :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도록 해야 합니다.
2. 교육
  - :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재화 및 용역과 금융상품 제공 및 이용
  - : 물건이나 서비스의 제공 및 신용카드의 발급이나 보험가입 등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달리 대우하거나 거부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4.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
  - :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등이 시설물에 들어오거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거부해서는 안되며, 시설물의 접근 및 이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5. 이동 및 교통수단
  - :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6.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 : 공공기관 등이 배포하는 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추어 수화나 문자 등의 정보이용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7. 문화·예술·체육활동
  - : 장애인이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하는데 있어 시설의 이용이나 참여를 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며 참여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8.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 : 해당 기관은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거나 사법·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이용에 필요한 서식의 제공과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보호자 및 진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구금 및 구속의 경우에도 생활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9. 모·부성권·성 등
  - : 장애인은 임신출산양육입양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성에 관한 권리 및 이를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집니다.
10. 가족·가정·복지시설
  - :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동의 없이 과중한 역할이나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장애인의 외모나 신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재산권의 행사, 거주이전의 자유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11. 건강권
  - : 의요기관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을 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행위와 의료정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12. 괴롭힘의 금지
  - :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됩니다.
13. 장애여성, 장애아동
  - : 장애여성은 임신, 출산, 고용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일하는 장애여성은 직장보육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의 기회 박탈 및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4. 정신적 장애인
  - :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발행일** : 2009년 12월

**저 자** : 2009년 '존중의 즐거움' 경기도 인권TFT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 김수영, 백은아, 김준식, 박정림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사랑발 박종숙

수원시정신보건센터 김순득, 김영희, 김유라

성남시정신보건센터 전 선

안양시정신보건센터 이상은

오산시정신보건센터 김한영

여주시정신보건센터 김 호, 임정희

의왕시정신보건센터 류효영

평택시정신보건센터 최명숙

한국정신장애인협회 김창용

**자 문** : 이종국(용인정신병원 재활부장)

인권교육센터 '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삽 화** : 휘리

**표지 일러스트** : 김두호

**발행인** : 이영문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장)

**발행처** :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 마음돌봄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9-89(5층)]

031-212-0435~7 / 팩스 031-212-0442 <http://www.mentalhealth.or.kr>